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 회계관직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, 사하구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비·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효율적인 기금사용을 위하여 운용기금의 사용용도를 보완개선함 (안 제4조)
- 나.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함 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- 다.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운용기금운용관과 운용기금출납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함 (안 제12조)
- 라.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시한을 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맞게 조정함 (안 제13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노인복지법 제4조
- 나. 지방자치법 제133조
- 나. 지방재정법 제110조, 지방재정법 제38조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(이하 "구지회"라 한다) 운영지원
2.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지원
3.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,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4. 기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참여 관련사업·행사지원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1. 기금운영관 : 사회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

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중 "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"를 "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운용기금의 용도)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지원 3. (생략) 4. 노인교실운영 5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	<p>제4조(운용기금의 용도) ①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지원 3. (현행과 같음) 4. 기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참여 관련사업·행사지원 <삭 제>
<p>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9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(3월, 12월)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.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회의참석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2조(회계담당)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적립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 2. 적립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 3. 운용기금운용관 : 구지회장 4. 운용기금출납원 : 구지회 사무국장 <p>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</p>	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 2. 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<p>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기금의 결산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</p>	<p>제13조(기금의 결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----- -----</p>